

# 유비쿼터스기술 응용연구센터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| 번호 | 개정일자     | 개정자 (서명) | 번호 | 개정일자 | 개정자 (서명)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|
| 1  | 2009.6.1 |          | 16 |      |          |
| 2  |          |          | 17 |      |          |
| 3  |          |          | 18 |      |          |
| 4  |          |          | 19 |      |          |
| 5  |          |          | 20 |      |          |
| 6  |          |          | 21 |      |          |
| 7  |          |          | 22 |      |          |
| 8  |          |          | 23 |      |          |
| 9  |          |          | 24 |      |          |
| 10 |          |          | 25 |      |          |
| 11 |          |          | 26 |      |          |
| 12 |          |          | 27 |      |          |
| 13 |          |          | 28 |      |          |
| 14 |          |          | 29 |      |          |
| 15 |          |          | 30 |      |          |

##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 규정

**제1조** (명칭 및 소재지) 이 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 센터의 영문 명칭은 Ubiquitous Technology Application Research Center(UTAC)이다

**제2조**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유비쿼터스 기술응용연구센터 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직무)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RFID와 Sensor Network 분야의 이론 및 응용에 관한 연구
2. SCM/ERP/PLM 분야의 이론 및 응용연구
3. RFID/USN/SCM/ERP/PLM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체 연구원의 계속교육
4. 정부·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
5. 기타 국외 대학, 기업 및 센터와의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수행

**제4조** (센터장)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고려해 총장이 임명한다. 부센터장은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** (조직)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에 연구부, 연구관리부, 운영위원회를 둔다.
2. 각 부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.
  - 가. 연구관리부는 시설의 관리, 서무 회계, 출판, 자료수집 등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
  - 나.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  - 다. 연구부는 RFID/USN 분야의 이론 및 응용 연구를 수행

**제6조** (연구원) ① 센터에 연구위원, 외부연구위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연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③ 외부연구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 또는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 중 센터장이 위촉한다.
- ④ 연구원은 학사 이상 (또는 전문대 졸업이상의) 학위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.
- ⑤ 보조연구원은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.

**제7조** 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센터에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센터장, 부센터장, 간사와 6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.
- ③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④ 운영위원은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, 관련연구기관 및 산업체 인사 등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,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 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3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 4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자문위원)** 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대학교원,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인사와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 (운영세칙)**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 (연구비 관리)**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학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